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000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8.

발 의 자 : 민병덕・김태년・김문수
이훈기・이강일・이광희
김남근・정진욱・양부남
박해철・박홍배・신장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,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

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변상금의 징수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	제81조(변상금의 징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